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4년 3월 23일(토) ~ 3월 28일(목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제출 방법	견본주택 방문 접수
견본주택 위치	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50-1 (대표번호 : 042-531-1008)
유의사항	·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·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일반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해당자			
구비서류		○	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	본인	당사 견본주택 비치 -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 시(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, 입주권 전매를 포함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분)(본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)(외국인 : 서명인증서)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본인의 세대구성원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상 입증할 수 없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)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바람)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 존속	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[성명,주민등록번호,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 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성명,주민등록번호,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]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 존·비속	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) ※ 직계존속 – 해외에 체류 중인(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)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– 만 30세 미만 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/ 직계비속	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 / 직계존속	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) 부양가족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하고,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신청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해외체류 관련 증빙 서류 (단신부임)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·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 (단신부임)	세대원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의 국내 거주를 증명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건축물관리대장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청약자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	○		위임장	본인 (청약자)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	※ 본인(청약자) 외 모두 제3자로 간주(대리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(외국인 : 서명인증서)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분)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등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(2024.02.29(목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.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